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임원 공개 채용 재공고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임원(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구분	직급	인원	주요 직무수행 내용	비고
상근임원	평택시무봉산 청소년수련원장	임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업무 총괄 및 직원 지휘·감독 •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경영목표수립 	

2. 응시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채용분야	구분	채용 자격기준	비고
상근임원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해당분야 : 청소년지도,육성,활동 업무분야
- ◆ 해당경력 : 기업 및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관련분야 및 해당직급에서 같은 업무 *경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경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직무수행 요건

구분	담당/주요 직무
법령·정관상	○ 수련원의 업무를 총괄
대내·외적	○ 평택시 및 의회관련 업무 ○ 재단 내·외 단체 및 기관과의 관계 ○ 외부고객 관련업무 ○ 시민단체·언론기관 관련 업무 ○ 이사회 관련 업무 ○ 경영관련 제안 및 자문 ○ 직원과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유지
재단의 사업 수행	○ 외부환경 분석 및 예측 ○ 경영합리화 추구 ○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 비전·목표 설정 ○ 연도별 사업계획(추진방향) 결정 ○ 성과에 대한 보상 ○ 조직 투명성 제고 노력
조직내부관리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 ○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 조직의 역량 제고 ○ 사건 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기타관련	○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 해결 ○ 담당사업(기능)의 변화 추구 ○ 효율적 조직운영

3. 임원결격 사유

가.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평택시청소년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된 사람
 12. 미성년자 <신설 2020.11.27.>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1.27.>
- ②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현재로 한다.

- 나. 거주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임기 및 보수

- 임기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 평가 등을 통한 2년 단위 2회 연임 가능)
- 보수 : 재단보수규정에 의거 지급(성과연봉계약체결)
(기본급 53,316천원 내에서 결정, 매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인상을 적용)
※ 부가급여(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별도

5.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평가)
나. 2차 시험 : 인적성검사(인성검사 결과 Pass 대상 합격 / 온라인 실시)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5개 항목, 항목별 20점 만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진행, PT발표와 질의응답으로 30분 내외 진행

다. 최종합격자 선정

- 1) 심사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80점 이상 고득점자 중 2배수 추천
 - 2)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 함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대상자 발표	인적성검사	면접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6.6.22.~7.7.	2026.7.16.	2026.7.17.	2026.7.20.	2026.7.21.	2026.7.23.	2026.8월 중	2026.9월 중

※ 위 모든 일정과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장소 · 일시, 합격자 발표 등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평택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http://www.pyf.kr>)**
알림마당→채용정보 게시판 참고

나. 접수방법

- 1) 접수장소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영기획실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94(동천리 681)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지하 1층
- 2)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및 우편접수(FAX,e-메일접수 불가)
- 3)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제외)

주의사항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7.7.(화)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7. 제출서류

가. 기본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지원서 1부	○ 소정양식 (붙임1),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붙임2)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붙임3) ※서식의 별도로 작성가능	USB로 제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동의서	○ 소정양식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정양식 (붙임5)	
결격사유 확인서	○ 소정양식 (붙임6)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원 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나. 추가제출서류(신분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원 본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원 본
자격증 1부 (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이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사 본 (원본지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원 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 발행분	사본 또는 원본 (원본지참)
채용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채용건강 검진 대체통보서	사본 또는 원본
사진	○ 파일로 제출	파일 제출

주) 해당서류 미제출 시 채용제한 사유 확인 및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 불가

8.기 타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해야 함(직무능력 관련 사항은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조)
- 응시원서 작성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접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 제공되지 않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시 재공고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
- 추천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공개모집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인원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음
- 본 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각 전형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610-4532)로 문의

<붙임 1>

지 원 서

임용예정 직위명 사진부착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만 세)				
	현주소					
	E-mail			병 역 사 항	군필여부	
	전 화	[자 택]			군별/계급	
	[휴대폰]			복무기간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세부전공:)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 역 사 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 시 사유:)				
	군별	계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 격 및 면 허	종류	취득년월일	수 상 내 역	수상명	수상일자	수상기관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직업	보 훈 · 장 애	보 훈 대상 () / 비대상 ()	
					장 애	
					/ () 등급	

(뒷면)

1.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중요도 순 작성)

구분	제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문			
기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2.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3.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그 밖의 업적

4.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5. 국제화 활동 사항(국제적인 공동 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년월일	
<p>※ 작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형식 없이 지원자의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4매 이내			

※ 여백 부족 시 별지에 이어서 작성 바랍니다.

<붙임 3>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생년월일
1. 직무수행목표	
2. 직무수행방안	
3. 직무수행계획	
4. 직무수행일정	
5. 결 언	

※ 여백 부족 시 별지에 이어서 작성 바랍니다.

<붙임 4>

(노란색영역부분만 자필로 작성(워드작성금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 등록번호를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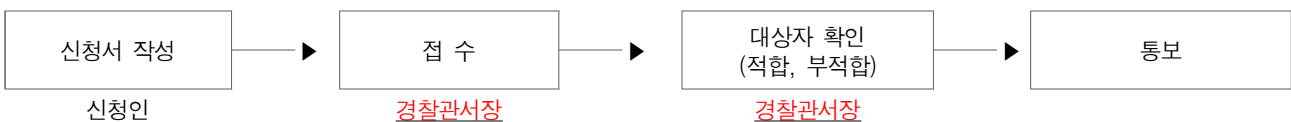
평택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수수료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없 음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노란색영역부분만 자필로작성(워드작성금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평택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자격·경력사항, 사진 병역사항 등	- 채용제한 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 추가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서류)의 진위여부 활용 - 제출응시자 본인확인 - 최종임용시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	- 채용 관련 목적 달성 후 인사 관리에 필요한 서류외 파기 단, 예비합격자(차순위)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 3개월 후 파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영구 보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 고유식별번호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 채용제한 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 추가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서류)의 진위여부 활용 - 제출응시자 본인확인 - 최종임용시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	- 채용 관련 목적 달성 후 인사 관리에 필요한 서류외 파기 단, 예비합격자(차순위)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 3개월 후 파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영구 보존)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 제 3자의 제공

제공 대상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평택시청 등 감사기관	감 사	응시원서	감사기간
4대 보험공단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험가입 취득, 상실시 이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 및 상실		퇴직연금 가입, 상실시 이용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결격사유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평택시청소년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향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된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현재로 한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평택시청소년재단 이사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청소년재단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